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9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1. 신고기간 : 2022. 5. 9. ~ 10. 19.(6개월간)

2. 신고대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3. 신고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4. 신고방법

- 신고 서식 : 신고접수기관에 비치 또는 신고접수기관의 홈페이지(공고)에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결정 신청서(구 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 (희생자 신청) 2명이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  
· (유족 신청)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작성한 보증서
- ▶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추가 제출
- ▶ (유족으로 추가 신청할 경우)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 결정 신청서(구 신고서) 제출방법

- 신고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영동군 : (2915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항간로 122(매천리, 영동체육관)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
- ※ 충북도청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

5. 신고접수기관

- 영동군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043-740-5981~4, <http://yd21.go.kr>)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043-220-2701~3, <http://www.chungbuk.go.kr>)
-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 경우)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희생자 결정 대상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신청 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유족 결정 대상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의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표(1) 및 부표(2)에 각각 기재합니다.						
사망(행방불명) 경우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다.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2. 유족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다. 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희생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청	[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희생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청	[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 유족 결정 대상자 명단(사망자 · 행방불명자용)

성명 (한자)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 희생자 결정 신청서(후유장애인용)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결정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피해상황	발생일시	당시 연령	당시 직업	
		주요 내용			

### 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

후유장애내용	※ 별지 기재 가능합니다.		
치료비	[ ] 필요	[ ] 불필요	
간병비	[ ] 필요	[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 필요	[ ] 불필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후유장애)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나.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4. 국립종합병원·외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	심사 및 심의·결정 요청	→	심의·결정	→	신청인에게 통지
--------	---	----	---	------	---	------------------	---	-------	---	----------

## 보증서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주소)		
확인사항	※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증명자료 첨부 등)합니다.		

위의 사항은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증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